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0호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2호(2021.7.22.)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1호로 결정된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채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1) 수용인구 : 기정) 500인 , 변경) 557인
 - 2) 주택건설계획 : 302세대 (변경없음)

[기정]

		()	(%)	()	(%)	
	27 TYPE	2	0.7	2	0.4	
	28-B TYPE	4	1.3	4	0.8	
	29-A TYPE	4	1.3	4	0.8	
	29-B TYPE	3	1.0	3	0.6	

		()	(%)	()	(%)
	32 TYPE	1	0.3	1	0.2
	41 TYPE	1	0.3	1	0.2
	42 - A TYPE	1	0.3	1	0.2
	59 TYPE	1	0.3	3	0.6
	60 TYPE	1	0.3	3	0.6
	61 TYPE	1	0.3	3	0.6
	79 TYPE	3	1.0	8	1.6
		22	7.1	33	6.6
	28 - A TYPE	56	18.5	56	11.2
	28 - B TYPE	1	0.3	1	0.2
	29 - A TYPE	9	3.0	9	1.8
	29 - B TYPE	37	12.2	37	7.4
	32 TYPE	19	6.3	19	3.8
	41 TYPE	13	4.4	13	2.6
	42 - A TYPE	19	6.3	19	3.8
	42 - B TYPE	14	4.6	14	2.8
	59 TYPE	12	4.0	32	6.4
	60 TYPE	12	4.0	32	6.4
	61 TYPE	12	4.0	32	6.4
	79 TYPE	10	3.3	27	5.4
	83 - A TYPE	13	4.4	35	7.0
	83 - B TYPE	40	13.2	106	21.2
	84 TYPE	13	4.4	35	7.0
		280	92.8	467	93.4
		302	100.0	500	100.0

가

「

」

‘

가

’

[변경]

			()	(%)	()	(%)	
		27 TYPE	2	0.7	2	0.4	
		28 - A TYPE	2	0.7	2	0.4	
		28 - B TYPE	4	1.3	4	0.7	
		29 - A TYPE	4	1.3	4	0.7	
		29 - B TYPE	3	1	3	0.5	
		32 TYPE	2	0.6	2	0.4	
		42 TYPE	5	1.7	14	2.5	
			22	7.3	31	5.6	
	SH	28 - A TYPE	54	17.9	54	9.7	
		28 - B TYPE	1	0.3	1	0.2	
		29 - A TYPE	9	3.0	9	1.6	
		29 - B TYPE	37	12.2	37	6.6	
		32 TYPE	18	6.0	18	3.2	
			119	39.4	119	21.3	
		41 TYPE	14	4.6	14	2.5	
		42 TYPE	9	3	24	4.3	
		44 TYPE	20	6.6	53	9.5	
		59 TYPE	13	4.3	35	6.3	
		60 - A TYPE	13	4.3	35	6.3	
		60 - B TYPE	13	4.3	35	6.3	
		79 TYPE	13	4.3	35	6.3	
		82 TYPE	13	4.3	35	6.3	
		83 - A TYPE	40	13.3	106	19.0	
		83 - B TYPE	13	4.3	35	6.3	
			161	53.3	407	73.1	
			302	100.0	557	100.0	

가 「 」 가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변경없음)